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인홍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68

발의년월일 : 2018년 2월 9일
발 의 자 : 장인홍 의원(1명)
찬 성 자 : 송재형, 박진형, 우창윤, 김태수, 신원철, 최판술, 유동균, 김창원, 오경환, 김제리, 김경자(강서) 의원(11명)

1. 제안 이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근로기준법을 우회하는 새로운 형태의 연장근로가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들이 모색되고 있음. 이에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이외에 사생활에 대한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 공무원에게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교육감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공무원의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 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사생활 보장) ① 교육감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3(사생활 보장) ① 교육감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